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29.

발 의 자 : 강기윤 · 이종성 · 백중헌
김상훈 · 박덕흠 · 조명희
임병헌 · 김미애 · 유의동
이용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및 환자 전원, 조정 등 의료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.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, 인력,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별도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.

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의2제4항 등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3항 중 “감염병전문병원을”을 “감염병전문병원(이하 이 조에서 “감염병전문병원”이라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”을 “감염병전문병원”으로 한다.

- ④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감염병병원) ①·② (생략)	제8조의2(감염병병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<u>감염병전문병원</u>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감염병전문병원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 <u>감염병전문병원</u> ”이라 한다)을 ----- -----.
<신 설>	④ 국가는 <u>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
④ (생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</u>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, 방법,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⑥ <u>감염병전문병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